

- ▶ 송파구청 **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문의** : 관광진흥과 02-2147-2289, 2288
- ▶ **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접수하는 곳** : 2층 민원행정과 4,5번 창구
- ▶ 비용 및 수수료: 접수비 20,000원, 등록면허세 67,500원(최초 등록증 발급 시 납부 이후 매년 1월 납부)
- ▶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: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

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(관광객이용시설업) 등록 처리요건

1.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
(※연면적-사업자가구의 면적임 (계단, 주차장 등 다른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제외))
2. 최소 방은 2개이상일 것(신청인이 실제 거주하는 방과 객실 1개 이상)
3.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
4. 해당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**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** 또는 **다세대주택** 중 하나에 해당할 것
5.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**노후건축물이 아닐 것**
【별표1】 **노후·불량건축물 기준** (붙임1- 참조) **충족할 것**
6. **건축물대장 상 “위반 건축물” 이 아닐 것**
▶ **노후 및 불량 건축물 기준일 보는 방법: 건축물대장 상 “사용승인일” 을 확인할 것**
⇒ 구조가 **철근(철골)콘크리트조**일 경우 신청일 기준 **30년 이내**
(예제) 신청일 2024년 7월30일 이면 **사용승인일**이 1994년 7월 30일 이후 날짜가 되어야 됨
⇒ 구조가 **철근콘크리트조 외(조적조, 연와조 등)**일 경우 신청일 기준 **20년 이내**
(예제) 신청일 2024.7월30일 이면 **사용승인일**이 2004년 7월 30일 이후 날짜가 되어야 됨
▶ **구조와 용도 보는 방법: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 란에서 확인할 것**
〈※※ 유의사항 ※※〉
▶ **실제 주택 내부구조와 건축물현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-※ 건축과 등 담당에게 문의**
관광진흥과에서 현장실사 시 위반건축물로 확인 될 경우 신청서류 “접수반려 처분” 예정
7. **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 불가**
8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, 객실마다 **단독경보형감지기, 일산화탄소경보기(개별난방시)**를 설치할 것
9. 외국인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위생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
10. 신청 본인의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할 것
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(관광객이용시설업) 구비서류

1. 관광사업등록신청서 (붙임.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참조)
2. 사업계획서- 사업개요, 시설개요, 영업계획 포함 (붙임. 사업계획서 샘플 참조)
3. 주민등록등본 1부.(실제 거주 여부 확인)
4. 주택의 평면도 및 배치도
5.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
-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: 건물/토지 등기부등본
-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: 임대차계약서사본 (소유자의 영업 동의 필수)
6.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전체 세대의 동의서 필요 (상가 포함)- (붙임.임대인 및 입주자 동의서)]
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(관광객이용시설업) 기타 유의사항

1. 본 사업은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
2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
3. 외국인관광객이 아닌 내국인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며, 대가를 받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

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4. 11. 7.>

관광사업 등록신청서

※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			○ 여행업,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: 7일 ○ 종합휴양업: 12일 ○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: 14일 ○ 그 밖의 관광사업: 5일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	휴대전화번호(여행업만 해당)	전자우편주소(여행업만 해당)

상호(명칭)	업종
주사업장 소재지	전화번호

자본금
영업개시 연월일

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

특별자치도지사·

귀하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제출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○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: 20,000원 ○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: 30,000원 (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)
------	-------	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(호텔업,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)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심의	→	등록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)		
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계획서(샘플서식)

1. 사업개요

- 1) 운영자 성명:
- 2) 연락처:
- 3) 주 소:
- 4) 상 호:
- 5) 거주인원:
- 6) 사업 목적 및 동기:

2. 시설개요

- 1) 주택의 종류
- 2) 주택의 총면적
- 3) 객실수 및 면적
- 4) 외국어 안내서비스 체제
- 5)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
- 6) 객실별 단독경보기 설치여부 및 위치

3. 영업계획

- 1) 숙박이외 서비스 제공(프로그램)
- 2) 식사 제공 방법
- 3) 홍보 방법

4. 숙박요금 및 프로모션 계획

1) 숙박요금(주중/주말)

2) 프로모션 계획

ex) 재방문시 10% 할인 / 7박이상 10% 할인 등

5. 투숙객 관리계획(숙박일지 작성 등)

6.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 계획

1) 비상연락망(유관기관 포함)

2) 투숙객과 갈등발생시 조치 계획

7.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

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동의서

(임대인)

○ 영업소 정보(주소)

-

○ 임대인 인적사항

-성명:

-생년월일:

-연락처:

○ 임차인 인적사항

-성명:

-생년월일:

-연락처:

위 주소에 대한 임차인의
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영업을 동의합니다.

임대인

(인)

입주자 동의서

아래와 같이 관광사업(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) 등록을 위하여
입주민의 동의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대상위치 :

○ 사업기간 :

○ 사업내용 :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

○ 동의서명

[illegible]